**「지적재산기본법」**

[법률 제66호, 2015.9.11., 개정]

**□ 개 요**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은 2002년 공포된 법률로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적재산과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총4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第一条 目的第二条 定義第三条 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及び豊かな文化の創造第四条 我が国産業の国際競争力の強化及び持続的な発展第五条 国の責務第六条 地方公共団体の責務第七条 大学等の責務等第八条 事業者の責務第九条 連携の強化第十条 競争促進への配慮第十一条 法制上の措置等**第二章　基本的施策**第十二条 研究開発の推進第十三条 研究成果の移転の促進等第十四条 権利の付与の迅速化等第十五条 訴訟手続の充実及び迅速化等第十六条 権利侵害への措置等第十七条 国際的な制度の構築等第十八条 新分野における知的財産の保護等第十九条 事業者が知的財産を有効かつ適正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の整備第二十条 情報の提供第二十一条 教育の振興等第二十二条 人材の確保等**第三章　知的財産の創造、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推進計画****第四章　知的財産戦略本部**第二十四条 設置第二十五条 所掌事務第二十六条 組織第二十七条 知的財産戦略本部長第二十八条 知的財産戦略副本部長第二十九条 知的財産戦略本部員第三十条 資料の提出その他の協力第三十一条 事務第三十二条 主任の大臣第三十三条 政令への委任**附　則** |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제4조 국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제5조 국가의 책무제6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제7조 대학 등의 책무 등제8조 사업자의 책무제9조 연계 강화제10조 경쟁 촉진에 대한 배려제11조 법제상의 조치 등**제2장 기본 시책**제12조 연구 개발의 추진제13조 연구성과의 이전 촉진 등제14조 권리 부여의 신속화 등제15조 소송절차의 충실 및 신속화 등제16조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등제17조 국제적 제도의 구축 등제18조 신 분야의 지적재산보호 등제19조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제20조 정보의 제공제21조 교육의 진흥 등제22조 인재의 확보 등**제3장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제4장 지적재산전략본부**제24조 설치제25조 소관 사무제26조 조직제27조 지적재산전략본부장제28조 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제29조 지적재산전략본부원제30조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력제31조 사무제32조 주임 대신제33조 정령에의 위임**부칙** |